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0758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기준·절차, 마을주민 보호조치 및 의견청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54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 개정 시 관계부처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5.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해당없음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마을주민 보호조치)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에 대하여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마을주민보호구간(이하 “보호구간”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보행자 등 사망사고가 발생한 구간
2.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속도 제한이나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
3. 마을주민이 보호구간 지정을 요청하는 구간
4. 그 밖에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보호구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 구간을 보호구간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로 구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자동차 통행량

2. 신호기, 안전표지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 현황

3. 최근 3년간 교통사고(보행자 교통사고를 포함한다) 발생 현황

4. 통행 또는 횡단하는 마을주민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간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마을이 시작되기 전 100m 지점부터 마을이 끝난 후 100m 지점 내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간으로 지정한다. 다만,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간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보호구간을 지정하기 전에 제2항에 따라 조사한 자료를 첨부하여 보호구간 지정에 대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구간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도 설치

2.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 설치

3.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이하 “도로안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4.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호조치 시행을 위한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의 협의

5.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의 설치

⑦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폐지, 주변 교통 환경의 변화 등으로 보호구간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보호구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2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마을주민 보호조치) ①</u> <u>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에 대하여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마을주민보호구간(이하 “보호구간”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1.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보행자 등 사망사고가 발생한 구간</u> <u>2.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속도 제한이나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u> <u>3. 마을주민이 보호구간 지정을 요청하는 구간</u> <u>4. 그 밖에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보호구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u> <u>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 구간을 보호구간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로 구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u>

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자동차 통행량

2. 신호기, 안전표지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 현황

3. 최근 3년간 교통사고(보행자 교통사고를 포함한다) 발생 현황

4. 통행 또는 횡단하는 마을주민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간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마을이 시작되기 전 100m 지점부터 마을이 끝난 후 100m 지점 내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간으로 지정한다. 다만,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간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보호구간을 지정하기 전에 제2

항에 따라 조사한 자료를 첨부하여 보호구간 지정에 대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법 제54조의2 제2항에 따라 보호구간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도 설치

2.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 설치

3.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이하 “도로안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4.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호조치 시행을 위한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의 협의

5.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

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의 설치

⑦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폐지, 주변 교통 환경의 변화 등
으로 보호구간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보호구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